‘26. 10.

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(안)

세 정 과

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(안)

의 안 번 호	2026-96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**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: 7,067천원(시비)**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에 의거,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'1.0/10,000'를 출연금으로 지원
- 2027년 본예산 편성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6년도	2027년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 감 액
		연구원 요구액	부서 산정액	증 감	
출연금 (시비100%)	6,848	7,067	7,067	-	219

※ 한국지방세연구원 :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기관

《 연도별 출연금 현황 》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전전년도 세입결산액	출연비율	출연금
2023년	59,964,428	1.2/10,000	7,196
2024년	64,996,093	1.2/10,000	7,800
2025년	70,352,453	1.2/10,000	8,442
2026년	68,476,208	1.0/10,000	6,848
2027년	70,665,924	1.0/10,000	7,067

※ 출연금 출연기준

▷ 2011년 ~ 2012년 :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0/10,000
▷ 2013년 ~ 2020년 :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5/10,000
▷ 2021년 :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3/10,000
▷ 2022년 ~ 2025년 :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2/10,000
▷ 2026년 이후 :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0/10,000

3. 따로붙임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(안)
○ 출연 심의 요구서
○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○ 출연 기관 현황
○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업계획서
○ 관계법령 발췌서
○ 방침결정문

붙임1 **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(안)**

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(안)

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, 김제시의회는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.

1. 출연대상 : 한국지방세연구원

2. 출연금액 : 금7,067,000원(금칠백육만칠천원)

3. 출연 필요성

-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

4. 근거법령

-「지방재정법」제18조

-「지방세기본법」제152조

-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94조

붙임2 출연 심의 요구서

주관부서	세정과	과 장	팀 장	주무관	전화번호
		최근열	함수경	최 진	063-540-3396

기 관 명	한국지방세연구원
출자·출연대상	○ 일반현황 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- 주요사업 ·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·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
출자·출연 사 업 비	○ **출자·출연 예정금액 : 7,067천원(시비)**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

구 분	2026년도	2027년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 감 액
		연구원 요구액	부서 산정액	증 감	
출연금 (시비100%)	6,848	7,067	7,067	-	219

출자·출연 필 요 성	○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
근거·법령	○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○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○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지도감독 부서의견 (총 평)	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정기 간행물 발간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, 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,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 ○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첨부자료	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조직표, 인력현황, 수지표 등)

붙임3 관리 · 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부서 검토 의견

< 이사회 2025년도 사업 평가 >

○ 전반적으로 연초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의 목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임

○ 연구 및 정책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함

- 총예산 19,744백만원을 운영하며 일반·수탁·행안부 출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,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,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등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지방세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

○ 연구사업의 경우 매년 과제 수행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, 재정분권, 부동산세제 등 현안과제 지원 연구 강화 및 연구 품질 개선을 통한 지방세입 정책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 있음

< 이사회 2025년도 결산 평가 >

○ '25년도 결산서 검토 결과 외부감사인(새로회계법인)의 감사보고서와 같이 연구원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

- 외부 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

○ 사업 집행 관리의 보완이 필요함

- 사업비 예산 대비 약 1,001백만원이 미집행된 바, 향후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집행 관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
- 잉여금은 2026년도(다음 연도) 이월 및 인건비 등으로 반영 예정이나, 중장기적 재정 운용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

2 출연금 검토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5년 결산 보통세	2026년 출연금 (C)	2027년 예산안			
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
출연금	70,665,924	6,848	7,067	7,067	-	219

붙임4 출연 기관 현황

한국지방세연구원

<table>
<tr><td>설립근거</td><td colspan="3">법 률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</td><td>전화번호 :
02-2071-2748
홈페이지 :
www.kilf.re.kr</td></tr>
<tr><td>주요연혁</td><td colspan="2">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</td><td>기관형태
(출자, 출연)</td><td>- 출연</td></tr>
<tr><td>인원현황
(2026년
8월 기준)</td><td colspan="4">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rowspan="2">계</th><th rowspan="2">원장</th><th colspan="4">연구관련직</th><th rowspan="2">사무직
시설직</th></tr>
<tr><th>연구위원직</th><th>연구원직</th><th>조사분석직</th><th>전문직 등</th></tr>
<tr><td>정 원</td><td>78</td><td>1</td><td>24</td><td>18</td><td>8</td><td>10</td><td>17</td></tr>
<tr><td>현 원</td><td>61</td><td>1</td><td>16</td><td>10</td><td>8</td><td>9</td><td>17</td></tr>
<tr><td>총인원</td><td>91</td><td colspan="6">정원외 인원 30명 (파견공무원 12, 위촉직 연구전문·행정원 등 18)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16">임 원
(2026년
8월 기준)</td><td>직 책
(직책명)</td><td>성 명</td><td>주요경력
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</td><td>비 고</td></tr>
<tr><td>이 사 장</td><td>정 종 섭</td><td>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</td><td>2024.2.2. ~
2027.2.1.</td></tr>
<tr><td>부이사장</td><td>성 낙 인</td><td>경상남도 창녕군수</td><td>2026.3.13. ~
2027.3.12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신 승 근</td><td>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</td><td>당 연 직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이 현 정</td><td>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</td><td>당 연 직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김 동 현</td><td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정책관</td><td>2025.8.30. ~
2026.8.29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이 상 호</td><td>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</td><td>2025.8.30. ~
2026.8.29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심 원 섭</td><td>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</td><td>2025.8.30. ~
2026.8.29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신 종 우</td><td>경상남도 행정국장</td><td>2025.8.30. ~
2026.8.29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김 성 수</td><td>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</td><td>2026.3.13. ~
2027.3.12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김 병 내</td><td>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</td><td>2026.3.13. ~
2027.3.12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조 규 일</td><td>경상남도 진주시장</td><td>2026.3.13. ~
2027.3.12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이 상 범</td><td>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
정책연구실장</td><td>2025.8.30. ~
2027.8.29.</td></tr>
<tr><td>감 사</td><td>김 정 선</td><td>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</td><td>당 연 직</td></tr>
<tr><td>감 사</td><td>김 옥 흔</td><td>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</td><td>2026.3.5. ~
2028.3.4.</td></tr>
<tr><td>주요기능</td><td colspan="4">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설립자본금
(단위:백만원)</td><td colspan="2">1
(직전연도말 기준)</td><td>출자·출연액
(단위:백만원)</td><td>139,826
('11~'25 까지 지자체가 출자·출연한 금액)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최근3년간
예산 현황
(단위:백만원)</td><td>연도</td><td>2024</td><td>2025</td><td>2026</td><td rowspan="3">재무현황
(백만원)
'25.12.31기준</td><td>자산</td><td>28,531</td></tr>
<tr><td>예산액</td><td>17,813</td><td>17,467</td><td>16,757</td><td>부채</td><td>1,583</td></tr>
<tr><td>지자체
지원액</td><td>13,079</td><td>12,415</td><td>10,470</td><td>자본</td><td>26,948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경영성과
(단위:백만원)
'25.12.31기준</td><td colspan="3">총수익</td><td>총비용</td><td colspan="2">당기순이익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17,600</td><td>16,554</td><td colspan="2">1,379</td></tr>
</table>

붙임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	구분	출자	
주관부서	세 정 과		출연	7,067천원(시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○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
○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

□ 출자 · 출연개요

○ 연구원 운영 예산('26년 : 167.5억원) 중 104.7억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

○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

□ 산출기초

○ 출연액 : 7,067천원

○ 전전년도 보통세의 1.0/10,000을 출연

- 출연근거 :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, 동법 시행령 제94조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합 계	'23년	'24년	'25년	'26년
출연금	30,286	7,196	7,800	8,442	6,848

□ 기대효과

○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
○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□ 출자 ·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○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, 지방재정·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

붙임6 관련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□ 지방세기본법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 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0. 9. 8., 2026. 2. 5.>

1. 1만분의 1.0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 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 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붙임7 | **방침결정문**

지평선 내 사연금까지 비상하는 김제

문서번호	세정과 - 13587
보존기간	5 년
공개여부	부분공개(5호)
보고일자	2026. 9. 1.

주무관	팀 장	과 장	국 장	부시장	시 장	결재
최 진	함수경	최 [illegible]	[illegible]	이혜서	정성주	
협 조	예산팀장 최소아		기획감사실장 오경관			

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(안)

1. 제안이유

○ 2027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지원 : 7,067천원

김 제 시
세 정 과